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 (02) 738-0238

/ 전송 732-7158

문서번호 국행이 93510 -

시행일자 1997. 5. 27. ()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취 급		행정조정실장	국 무 총 리
보 존			
조정관	3/	MP	3/
심의관	3/	총괄심의관	3/
담당관	김태영		
기 안	이 련 주 3/		협 조

제목 소프트웨어의 구입·사용에 관한 국무총리 지시(1997년 - 12호)

1. 소프트웨어를 아무런 대가 없이 복제 사용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나, 복제가 용이하다는 소프트웨어의 특성 때문에 손쉽게 복제되어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지시하니 소프트웨어의 구입과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97년의 경우

- 신규 개인용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규 개인용 컴퓨터 구입시에 동시 집행하고, 기존 개인용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기능향상 등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조기에 집행
-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 재원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재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집행

나. '98년 이후의 경우

- 이미 정보통신부가 각부처와 공공기관에 보낸 공문(진흥93510-114, '97. 4. 16)을 토대로 각 기관별 실정에 맞게 소프트웨어구입비 및 기능향상비 등을 확보토록 하고 재정경제원은 예산에 적정수준을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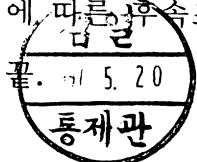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 (02) 738-0238 / 전송 732-7158

3. 아울러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정보통신부고시 1997-9호)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소프트웨어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관리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각 부처·청은 산하기관 및 단체 등에서도 상기 지시사항에 준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행정사항

각 부처·청은 「국무총리지시에 따른 후속조치계획」을 수립, '97. 6. 14(토) 까지 당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5-20



국무총리

수신처 : 가 (05-54)